

언론조정신청사례

편집자 주

본 사례는 연구자료이므로
사건관계인의 권익을 위해
인용할 때는 가주소·가명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들의 아들이 숙제를 안했다는
꾸지람을 듣고 자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경찰보도·손해배상)**

사건번호 : 2006대전조정11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 1. 김○○ 2. 윤○○

피신청인 : TJB-TV

중 재 부 : 대전중재부

접 수 일 : 2006. 6. 27.

처리결과 : 합의

보도내용

TJB-TV : 「8시뉴스」 프로그램 (2006년 6월 9일 20:00)

내 용 : ▷ 김○○ 앵커 :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11살 짜리 초등학생이 부모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뒤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김○○ 기자 : 어젯밤 10시쯤 대전에 한 아파트 입구에서 11살 김모 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군은 이 아파트 5층 복도에서 스스로 뛰어내렸습니다.

숙제를 안 했다면 부모님께 꾸지람을 들은 뒤였습니
다. 그러나 이웃 주민들은 김군의 가정이 평범했다고
전했습니다. (중략)

▷ 김○○ 기자 : 실제로 숨진 김군은 평소에도 죽
고 싶다는 말을 동생에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은 별 것
도 아닌 일에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생 인터뷰 : 엄마가 잘 안 해줘서 뭐지? 김밥
도 못 먹고 막 밥도 못 해와가지고 그런데 뭐지? 그
홈피에다가 죽고 싶다고 막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 김○○ 기자 : 아이에게 지나친 스트레스를 주
지 말고 평소에 아이들과 꾸준히 대화를 나눠 정서
적인 교감을 가져야 어린이 우울증을 막을 수 있다
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TJB뉴스 김○○
입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제 목 : 정정보도문
- 본 문 : 본방송이 지난 6월 9일 「8시뉴스」 프로그
램에 11살짜리 초등학생 김모 군이 숙제를 안했다고
부모로 부터 꾸지람을 듣고 난후 자살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익명의 초등학생(6학년)과 인터뷰 과정

에서도 사망학생이 부모가 도시락을 싸주지 않고, 김밥을 싸주지 않아 홈페이지에서 죽고 싶다는 내용을 주고 받은 적이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사망한 김군은 엄마가 당일 저녁 9시30분쯤 집에 귀가한후, 학교생활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뿐, 꾸지람을 듣거나 야단을 맞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터뷰한 초등학교도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님이 밝혀졌고 그 학생과 홈페이지 주고 받은 사실조차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60,000,000원

합의사항

- 제목 : 정정보도
- 내용 :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 피신청인은 위 정정보도문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TJB 대전방송 2006년 7월 14일 저녁 8시 뉴스프로그램 말미에 방송하되, 제목은 배경화면에 자막으로 표시하고 내용은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한다.
- 단, 기일을 지체할 경우 지체 1일당 금50만원의 금원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금1,500만원을 2006년 8월 7일 까지 지급하되,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2006년 8월 8일 부터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TJB-TV : 「8시뉴스」 프로그램 (2006년 7월 14일 20:00)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서울대민간인 감금 폭행' 사건을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잘못 보도해 폭행피해자인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서울조정262

청 구 명 :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 전○○

피신청인 : 문화일보

종 재 부 :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 2006. 7. 4

처리결과 : 합 의 (반론)

취 하 (정정, 손배)

보도내용

문화일보 : 『'서울대 프락치사건'으로 수차례 재판받
아』 제하의 기사 (2006년 1월 5일자 7면)

내 용 :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선거법 위반과 서울대 프락치 사건 등으로 법원에서 수차례 재판을 받았다. 특히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16, 17대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동시에 진행돼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끊임없이 회자되는 '서울대 프락치 사건' = 유 의원은 1978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한 뒤 학생운동을 시작했다. 유신 정권이 막을 내린 직후인 1980년 서울대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으로 활동하다 구속되면서 체적된 후 강제징집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이후 4년 만인 84년 당국의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대대적인 복교 허용조치로 대학으로 되돌아와 복학생협의회장을

말았다. 그러나 그해 9월17일부터 10일간 서울대 학생들이 학내에서 비서울대생 등 4명을 정보기관의 정보원으로 오인, 감금 폭행해 부상을 입힌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에 연루돼 유 의원은 구속돼 1년 6개월의 형을 살았다. 당시 유 의원이 감옥에서 쓴 '항소이유서'는 유명세를 탔다. 유 의원은 항소이유서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은 네 명의 가짜 학생을 다수의 서울대 학생들이 연행·조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혹은 심각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정의했다. 그러나 전모(51)씨 등 당시 피해자들은 2004년 4월 "유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항소이유서'에서 당시 사건 피해자들을 '프락치'로 지칭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프락치 사건'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의원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하기도 했다. (후략)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2006년 1월 5일자에 『'서울대 프락치사건'으로 수차례 재판받아』라는 제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84년부터 검찰수사 및 법원판결 등 사실 확인 결과, 민간인 4명은 정보원 프락치가 아니며, 서울대 여러 학생조직단체 간부들의 감금조사, 폭행·고문·강요, 조작·왜곡·테러 등으로서 허위로 조작·왜곡된 사건으로 서울대 프락치 사건 명칭은 서울대 간부 학생들의 민간인 고문, 조작·왜곡 사건으로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참조〉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 2006. 1. 5.자 정치면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수차례 재판 받아』 제하의 기사와 관련, 전모(51)씨는 이 기사에 언급된 '서울대 프락치 사건'은 '서울대 간부학생들 민간인 고문 및 자백 강요 사건'이라고 바꿔 불러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6년 8월 9일까지(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문화일보 2면에 게재한다.
- 위 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1일 금 2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편집국장 및 이현미 기자에 대한 정정보도청구·모든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지 아니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문화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8월 3일자 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신청인 회사가 골재채취용바지선을
운항하면서 어장을 망가뜨리고
황폐화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반론보도)**

사건번호 : 2006대전조정14

청 구 명 : 정정·손배청구

신청인 : 주식회사 ○○해운 (대표이사 김 ○ ○)

피신청인 : 중도일보

중재부 : 대전중재부

접수일 : 2006. 7. 7.

처리결과 : 합의 (정정)

취하 (손배)

보도내용

중도일보 : 『보령모래채취장 주민 멎는다』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3일자 17면)

내용 : 죽도어민회(회장 장○○)소속 어민들이 D해운이 남포면 월전리 골재 선착장을 운영하면서 어망과 부표 등을 망가뜨리고 선착장 폐수로인해 어장이 황폐화 되고 있다며 집단민원을 제기 했다.

어민회는 D해운이 바지선을 운항하면서 무분별하게 항로를 이용해 어민들이 바다에 설치해놓은 어망과 부표 등을 망가뜨리고 분실하는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모래 선착장에서 흘러나온 폐수로 인해 인근 어장이 황폐해 지고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어 해양수산부 충남도청 보령시청에 각각 진정서를 제출했다.

보령시에 따르면, D해운은 지난 6월5일부터 오는 5일까지 보령시로부터 바다모래채취 등록업 영업정지 1개월을 당하고 지난달 30일 까지 모래선착장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복구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 업체는 모래선착장 3개월 전에 D해운을 운영하던 전 회사로부터 모래선착장 허가 연장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수하여 지금까지 불법을 저지르고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자 법원에 항소중이라고 밝혔다.

어민들은 D해운으로 인해 소중한 삶의 터전인 바다를 유린당하고 있다며 죽도어민회 소속 26명이 집단

으로 진정서를 제출 하게 되었다고 주장 했다.

어민회 회장 장○○ 씨는 “지난해 12월30일부로 허가기간이 종료되어 보령시는 6월30일까지 원상복구 완료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D해운은 원상복구명령기간동안 복구는 하지 않은 채 불법을 자행하여 시는 2회에 걸쳐 보령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청관계자는 “7월1일부로 원상회복대집행을 강행 할 것이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본지가 2006년 7월 3일자 중도일보 및 인터넷신문에 『보령모래채취장 주민 멎는다』는 대체목과 “죽도어민회 D해운 불법영업에 어장황폐화 집단민원”이라는 소제목하에, D해운이 남포면 월전리에서 골재 선착장을 운영하면서 운항하는 바지선이 무분별하게 항로를 이용해 어민들이 바다에 설치해놓은 어망과 부표 등을 망가뜨리고 분실하는 일이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으며 선착장폐수로 인해 어장이 황폐화되어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고, 이 업체는 모래선착장 3개월 전에 D해운을 운영하던 전 회사로부터 모래선착장 허가 연장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수하여 지금까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D해운은 보령시의 원상복구명령기간동안 복구는 하지 않은채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으나 이는 모두 사실과 다름이 밝혀져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D해운은 위 월전리에서 모래채취장을 운영한 바도 없고 모래채취장으로 인해 주민을 멎들게 한 바도 없었으며, 단지 월전리에서 골재와 모래를 선착하고, 선착된 모래를 제염하였을 뿐이고, 서산시와 인근도서로부터 모래와 골재를 운반하는 바지선은 항시 규정된 항로를 이용하여 운행하였고 어민들이 적법히 설

치한 어망등을 망가뜨린 사실이 없으며, 또한 D해운이 운영하는 골재나 모래를 선착하는 시설과 모래를 제염하는 시설은 모두 폐수가 유출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제염시설의 경우 설치하던 초기에 어장등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오해가 있었고 이를 우려한 보령시가 제염시설에 대하여 연장불허의 조건까지 붙였지만 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결과 주변어장은 물론 주위의 환경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D해운은 그동안 민원을 받은 바 없이 원만하게 위 시설을 운영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작업장 부근의 도로를 새로이 개설하고 포장하여 인근주민들의 편익에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보령시가 D해운의 기간연장신청을 반려하여 현재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신청인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000,000,000원

합의사항

- 제 목 : 반론보도문
- 내 용 : 본지의 2006. 7. 3자 중도일보 및 인터넷신문에 『보령모래채취장 주민 멍든다』는 제목과 “죽도 어민회 D해운 불법운영에 어장황폐화 집단민원”이라는 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당사자인 D해운은 다음과 같이 반론보도를 요청하여왔다.

D해운은 위 월전리에서 모래를 채취하거나 모래채취장을 운영한 바도 없습니다. D해운은 단지 서산과 태안에서 채취된 해사를 위 월전리로 운송하여 제염작업을 거쳐 보령, 부여, 서천 등의 공사현장의

건축용 모래로 공급하여 왔고, 도서지방에 필요한 골재를 위 작업장에서 선적하여 운송하였을 뿐입니다.

D해운이 운영하는 골재나 모래의 선착시설, 모래제염시설은 모두 폐수가 유출될 수 있는 시설도 아닙니다. 모래제염시설은 청정지역인 태안해저에서 채취된 해사의 염분을 민물로 씻어 내는 시설에 불과합니다. 모래제염시설의 설치 초기에 어장등 주변 호나경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오해가 있었고 보령시가 허가당시 이를 우려하여 연장불허의 조건을 부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결과 주변어장은 물론 주위의 환경이나 생태계에 전혀 영향을 주는 시설이 아니라는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D해운은 그동안 주위로부터 민원을 받은 바 없이 원만하게 위 시설을 운영하여 왔고 일부 어민이 항로까지 침범하여 설치된 어망에 대한 부당한 피해요청도 대승적으로 모두 보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려 사정을 비추어 D해운이 기간연장을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기간연장을 신청하였는데 뜻밖에도 2005. 12. 14, 보령시가 기간연장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D해운은 이러한 뜻밖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D해운의 자체조사결과, D해운의 운영에 불만을 가진 인근 죽도의 어민들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보령시와 귀사에 유포하였고 이러한 허위사실의 유포가 상당부분 반려처분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D해운은 이러한 억울한 사정을 차후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증거에 의하여 모두 밝힐 예정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위 반려처분으로 말미암아 처분이후 전 직원이 해고되고 작업장은 황폐되어 현재 부도직전의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D해운은 그간에 있었던 이와 같은 몇 차례의 귀사의 보도는 이를 일과성으로 보아 묵과하였지만, 조사 결과 위 보도들도 행정심판 무렵에 맞추어 보도되었고, 이번의 보도 역시 D해운이 사운을 건 법원재판의 재판기일이 지정된 이 시기에 맞추어 보도되었기 때문에, D해운으로서의 생존권보호의 절박한 처지에서 어쩔 수 없이, 귀사의 이의를 제기하여, 이와 같이 반론보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D해운은 위와 같이 반론합니다.

· 피신청인은 위 반론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중도일보 2006년 7월 25일 이전까지 17면 상단에 상자기사로 게재하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와 같

은 면의 고딕활자체로 하고 내용은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또한 위 반론보도문을 인터넷신문(www.jongdoilbo.co.kr)의 지역판에 중도일보 보도일 부터 3일(72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반론보도문이 연결되게 한다.

합의사항 이행결과

중도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06년 7월 22일자 12면)

내 용 : <합의사항 참조>

